코로나19 김염증 확산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매뉴얼

2020. 12.



법 무 실

목 차

I. 개요1
Ⅱ. 손해배상청구 개관1
① 민법 상 불법행위책임1
② 관련 쟁점1
Ⅲ. 감염병 예방법 상 조치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책임 ·4
① 자가격리조치4
② 집합금지명령위반 등 방역수칙 위반8
③ 역학조사 방해11
④ 자가격리 권고 등 수칙 위반 ·······13
Ⅳ. 손해배상청구 절차 ·······15
♥. 코로나19 구상권 협의체16
Ⅵ. 정부법무공단의 법률 지원 ·······18
VII. 문의처18

Ι

개요

- 정부당국의 총력 대응에도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이 증가세에 있어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고자 함
- '20. 4. 배포하였던 매뉴얼의 내용을 최신화 하고 코로나19 감염 확산행위 유형을 추가 검토하여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Π

손해배상청구 개관

① 민법 상 불법행위책임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민법 제750조)
- 따라서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① 상대방의 고의·과실, ② 행위의 위법성, ③ 손해의 발생, ④ 고의·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모두 입증해야 함

② 관련 쟁점

□ 고의 · 과실

○ (고의)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인식 하면서도 그러한 행위를 실제로 행하는 것을 의미

- (과실)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인식할 수 있었거나 그러한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의미
- 격리조치 위반 등 행위 시,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등에 따른 손해가 발생할 것에 대한 인식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

□ 위법성

- 일반적으로 고의·과실로 인한 행위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음
- 다만, 그러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허용되거나 정당성이 인정되는 등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손해의 발생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침해행위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 성립
- 코로나19 감염 확산 행위가 없었다면 지출하지 않았을 추가 방역 비용, 코로나19 감염증 검사 비용, 치료비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부담한 비용이 손해로 인정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손해로 인정될 수 있는 비용은 ① 접촉자 관련 비용, ② 방역 관련 비용, ③ 향후 추가 배상 가능 비용 등이 있으며, 구체적 범위 및 비용 부담주체는 다음과 같음

	부담 주체	
	- 직접 접촉자 자가격리 조치에 따른 생활지원비 및 생활지원	국가 · 지자체 (감염병예방법
	물품 구입비(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4) : 평균 가구원 수	제70조의4,
	(2.4인) 기준 68만6천 원	동법 시행령
	기기 기호기체 에워 ㅋㅋ, 110 기기에/기상대체비비 제04ㅋ	제28조의5)
직접	- 직접 접촉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비(감염병예방법 제64조,	
접촉자	제65조, 제67조) : 약 16만 원	
관련 비용	- 검사 이후 확진자 발생 시 해당 환자에 대한 치료비(감염병	국가・지자체
	예방법 제64조, 제65조, 제67조)	(감염병예방법
	※ 치료비의 경우, 개별 환자의 증상에 따른 편차로 인해	제65조 제4호,
	사전적·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움	제67조 제9호 등)
	※ (의료보험가입자) 치료비는 건강보험 부담금 80%, 본인	
	부담금 20%이며,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	
	- 감염병의심자가 머무른 지역 중 오염되었다고 판단된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한 방역비 및 방역부분 물품 지원비	
특정지역	(감염병예방법 제64조, 제65조, 제67조)	지자체
방역 관련	※ 방역비의 경우, 제주도는 최대 5,000만 원으로 산정	(감염병예방법
비용	하였으나 면적, 장소 등에 따라 지출되는 방역비가	제64조 제7호)
	다르고 일정한 기준에 따른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아니하여 개별적 파악이 요구됨	
	- 오염 판단 지역의 폐쇄조치(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9호)에	
향후 추가	따른 영업손실 보상액 등은 현재 국비로 지출되고 있지는	
배상 가능	않으나, 향후 영업손실을 주장하는 자가 보상청구 시	
비용 	국가가 보상해야 할 가능성 있음(감염병예방법 제70조 제4호)	
v 7L01H1∩		

- ※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시·도는 특별자치도·시·군·구경비의 2/3를 보조, 국가는 시·도 부담 경비의 1/2 이상 보조
-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진단검사비·치료비·생활지원비의 경우 내국인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 50% 부담, 외국인에 대하여는 국가가 전부 부담

□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인과관계는 구체적 사실 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됨 ○ 격리조치 등 위반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손해를 주장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입증해야하며, 인과관계 인정을 위한 역학 조사 등의 조치가 필요할 수 있음

□ 손해배상청구 절차

- 소 제기자가 국가인지 지방자치단체인지에 따라 절차에 차이가 있음 (15쪽 참조)
- 정부법무공단을 통한 소송지원도 가능(16쪽 참조)

\prod

감염병 예방법상 조치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책임

① 자가격리조치 위반

□ 자가격리조치

- "자가격리조치"라 함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상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하는 다음의 처분·조치를 의미함
 - 제1급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의심자를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할 수 있음(감염병예방법 제42조 제2항 제1호)
 - 감염병 유행 시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켜야 함(감염병예방법 제47조 제3호)
 -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켜야 함(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14호)

- "자가격리조치"는 법률에 근거한 처분·조치라는 점에서, 행정지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자가격리 권고조치"와는 구별됨
 - 예를 들어 수원시 영국인 확진자에게 교부된 유증상자 생활수칙 안내문과 같이 관할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배포한 내용은 감염병 예방법 상 "자가격리조치"가 아닌 "자가격리 권고조치"임

	감염병예방법 상 자가격리조치	자가격리 권고조치(유증상자 생활수칙 안내)
주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지방자치단체장)	수원시 영통구 보건소
주요 내용	외출 금지 (불가피한 경우 관할 보건소에 사전 연락)	외출 및 접촉 자제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이용 자제
	관할 보건소의 1일 2회 연락 및 본인의 증상 모니터링 기록 안내	증상 악화 시 보건소 문의 요청

- 감염병예방법 상 "자가격리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개요) 질병관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의 예방과 방역 등을 위해 감염병의심자를 자가 또는 시설 등 일정 장소에 격리할 수 있음
 - (통지 방법) 감염병예방법 제43조의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 발급
 - (대상자 준수사항)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한 외출 금지, 불가피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 연락 후 외출 등
 - (관리 방법) 관할 보건소에서 1일 2회 연락하여 증상 확인, 본인이 증상을 관찰하여 서식에 기록하도록 함

○ 격리조치위반 현황 및 관련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음

항 목	내 용		
위반 현황	대상기간	- '20. 2. 17. ~ 12. 20.	
	위반 인원	- 총 1660명	
주요 사례	검사 중 이탈	- 충북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격리치료를 받던 중 무단 이탈	
	날짜 오인	- 격리해제 하루 전 통지서가 도착하여 해제일 착오	
	병원 진료	 자가격리 대상자 모친의 무릎 통증으로 병원 방문 동행위해 무단 이탈 부산 소재 자가격리 대상자 삼성제일산부인과 진료차방문 위해 무단 이탈 	
	생업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조치 통보를 받았음에도 병원에 출근(4건) 자가격리조치 대상자가 본인의 공인중개사 사무실 출근 확진자 접촉 사실로 자가격리 통보를 받음에도 불구 약국에 출근 카페, 음식점 등에 출근(2건) 자가격리통보를 받았음에도 인근 공원, 인력사무소 방문 핸드폰을 숙소에 두고 조업 차 출항 	
	선별진료소 방문	- 선별진료소 방문을 위해 무단 이탈	
	생필품 구입	 생필품 구입을 위해 자택 인근 마트 방문 마스크 착용 후 편의점을 방문 기타 마트, 편의점, 빵짐 등 식료품 기타 생필품 구입을 위한 무단 이탈(16건) 	

□ 고의·과실 및 위법성의 판단기준

- 자가격리조치의 요건 및 기간
 - 확진환자, 확진환자의 접촉자 등에 해당하여 감염병예방법 상 격리 대상임을 통지 받아야 하고,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 간 격리를 유지하여야 함(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 고의·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 일반적으로 격리대상임을 통지받아 자가격리조치 된 경우, 증상 발현 여부와 무관하게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이 전파 및 확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최소한 자가격리조치 위반 사실이 발각될 경우, 자신의 이동 경로에 대한 추가 방역 등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음
- 위법성의 인정 여부
 - 격리대상자는 스스로 격리조치에 따라야 할 법률상 의무를 지며(감염병예방법 제6조), 위반 시 형사처벌도 가능하므로(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 3), 고의·과실에 의한 자가격리조치 위반 행위의 위법성은 일반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큼
 - ※ 송파구 60대 미국 입국자, 주소·연락처를 속이고 자가격리이탈한 사례 참조
 -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자가격리조치 위반 행위가 사회적으로 허용되거나 정당성이 인정되는 등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러한 점은 구체적 사정에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됨

□ 손해 및 인과관계

- 자가격리조치 위반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발생 가능한 비용은 ① 접촉자 관련 비용, ② 방역 관련 비용, ③ 향후 추가 배상 가능 비용 등이 있으며, 구체적 범위 및 비용 부담주체는 p.5 참조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각종 경비는 원칙적으로 법률상 의무에 해당하여, 손해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 다만, 자가격리조치 위반자의 행위로 인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통상 부담할 의무 이상의 비용 지출이 초래되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추가 비용 지출의 범위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손해를 인정할 수 있음
 - ※ 국가배상청구 사례이기는 하나, 메르스 사태 당시 ① 1번 환자 → 16번 환자 → 30번 환자 순, ② 1번 환자 → 14번 환자 → 104번 환자 순으로 감염병이 확산되었는데, 법원은 국가가 역학조사를 실시하였다면 1번 환자로부터 30번 환자, 104번 환자에 이르기까지 순차 감염된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역학조사를 지연하여 결국 30번, 104번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며 유족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음

② 집합금지명령 등 방역수칙 위반

□ 집합금지명령 위반

- "집합금지명령"은 감염병예방법상 질병관리청장, 지방자치단체장,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의미함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집합금지·제한이 적용되는 시설과 조치 사항이 다르며, 지난 12월 8일 이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주요 집합금지명령 적용대상과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음
 - (집합금지) 유흥시설 5종에 더하여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은 운영중단

□ 집합제한명령 등 방역수칙 위반

- "집합제한명령"은 감염병예방법상 질병관리청장, 지방자치단체장,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는 조치를 의미함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
 -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은 집합제한명령에 근거함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집합금지·제한이 적용되는 시설과 조치 사항이 다르며 지난 12월 8일 이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주요 집합제한명령 적용대상과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음
 - (운영시간 제한) 영화관·PC방·미용실·오락실·독서실·놀이공원·마트· 백화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이용인원 제한 등) 공연장은 좌석 두 칸 띄우기 실시, 목욕장업은 $16m^2$ 당 1명으로 인원제한하고 음식 섭취 금지, 사우나시설 운영금지
 - (모임·행사) 설명회, 기념식, 워크숍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10인 이상 모임·약속 취소 권고

- (종교활동) 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 등을 원칙으로 하며 종교 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 집합금지·제한명령 위반 주요 사례
 - ▶ 금산군수로부터 집합금지 명령을 통보받고도 손님을 목욕탕에 입장시킨 업주 불구속 기소 ('20. 4. 대전지검)
 - ▶ 서울시장의 집합금지 명령에 위반하여 손님들을 출입시킨 주점 운영자, 부산시장의 시설 이용자간 1~2m 거리 유지 등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한 주점 운영자 각 불구속 기소 ('20. 5. 서울동부지검 및 부산지검)
 - ▶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여 참석자 20여명과 함께 방문 판매업체 내에서 상품설명회를 개최한 사법 불구속 기소 ('20. 7. 광주지검)
 - ▶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여 교인 200여명과 함께 교회 현장 예배를 강행한 목사 불구속 기소 ('20. 7. 광주지검)

□ 고의·과실 및 위법성의 판단기준

- 고의·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 코로나19와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이 무과실책임에 이르는 것이 아닌 만큼 집합금지·제한명령의 대상 업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 했다는 사실만으로 대상 업체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음
 -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업체에서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집합금지· 제한명령을 위반하거나 각종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에야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 중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의 존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
- 위법성 인정 여부
 - 집합금지·제한명령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므로(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 집합금지·제한명령 위반 행위의 위법성은 일반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큼

□ 인과관계 인정여부

- 집합금지·제한명령을 위반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위반행위로 인해 개별 시민들이 코로나19확진판정을 받았고, 그로 인한 국가·지자체 손해의 인과관계가 입증된 것은 아님
 - 형사처벌은 위반행위 자체에 대한 사실 및 위법성만 판단하는 것임
 - 손해배상청구액 전액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의 집합금지·제한명령을 위반한 행위 이외에 다른 요소가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없었다는 개별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③ 역학조사 방해

□ 동선 허위 신고 등 역학조사 방해 행위

- 감염병예방법 상 역학조사에서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회피, ② 거짓으로 진술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 ③ 고의적 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감염병예방법위반 제79조 제1호)
- 역학조사 방해 주요 사례
 - ▶ 역학조사관에게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 31번 확진자를 접촉했다'고 허위로 진술한 피의자 구속 기소 ('20. 3. 수원지검)
 - ▶ 코로나19 확진판정 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혼소송 중인 前 남편을 만난 사실'을 은폐한 피의자 불구속 기소 ('20. 5. 평택지청)
 - ▶ 방역당국에 시설물 현황 수백 곳을 누락하여 제출하고, 교인명단을 제출 하면서 일부 교인 정보를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으로 방역 활동을 저해한 종교단체 교주 등 관계자 4명을 구속 기소하고, 15명을 불구속 기소 ('20. 8. 수원지검)

□ 고의·과실 및 위법성의 판단기준

- 고의·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 제2호는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자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으로 진술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으므로 방역 당국에 허위진술을 하는 행위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대한 고의, 추가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충분히 예견가능하다고 판단됨
- 위법성 인정 여부
 - 역학조사 방해 행위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므로 (감염병예방법위반 제79조 제1호) 역학조사 방해 행위의 위법성은 일반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큼

□ 인과관계 인정여부

- 역학조사 방해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방해행위로 인해 개별 시민들이 코로나19확진판정을 받았고, 그로 인한 국가·지자체 손해의 인과관계가 입증된 것은 아님
 - 형사처벌은 위반행위 자체에 대한 사실 및 위법성만 판단하는 것임
 - 손해배상청구액 전액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역학조사 방해 행위가 감염의 원인이라는 개별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 '20. 10. 22.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선을 숨겨 방역에 혼란을 준 목사부부를 상대로 1억 2000만 원 (방역소독비용 139만 원, 확진·접촉자 생활지원비 7350만 원, 검사비용 2515만 원, 진단검사 물품구입비 1286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④ 자가격리 권고 등 수칙 위반

□ 자가격리 권고 조치 위반

- "자가격리 권고조치"는 보건당국이 코로나19 감염 의심자에게 자가격리를 권유하는 것으로 일종의 행정지도라 볼 수 있음
- 법률상 의무를 발생시키는 자가격리조치에 이르지 않은 권고 조치의 경우에도, 행위자의 감염 가능성 인식 수준 및 이에 상응하는 주의 의무 위반행위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
 - ※ 제주도는 자가격리 권고에도 불구하고 외부활동을 한 모녀를 상대로 제주 지방법원에 1억1,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 제기

□ 고의·과실 및 위법성

- 감염병예방법 상 자가격리조치 위반은 아니더라도, 입국 시점 및 선별진료소의 검체 채취 등 본인의 증상에 대한 인식 정도와 이에 따른 접촉자 감염 가능성 인식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상 준수 하여야 할 생활 안전상 주의의무가 신의성실의 원칙 상 인정될 수 있음
- (사례) 수원시 영국인 확진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불법 행위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
 - 수원시 영국인 확진자는 관할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감염증
 확진 여부 판단을 위하여 검체 채취 후 자가격리를 권고하는
 내용의 생활수칙 안내문을 교부받음
 - 따라서 위 확진자의 경우 최소한 검체 채취를 받고 자가격리를 권고 받은 시점에서는, 스스로 자가격리 수칙을 준수하고 다중이용 시설 방문을 자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크린 골프장 등을 방문하여 5명의 추가 접촉자를 발생시켰으므로, 고의·과실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방역 등 조치에 따른 손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볼 수 있어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

□ 자가격리 권고 등 수칙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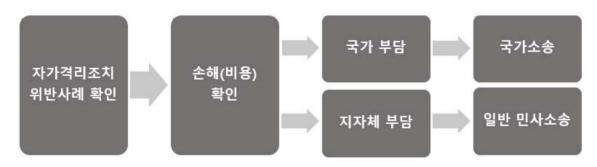
○ 감염병예방법 상 자가격리조치 위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가격리 권고 등 수칙을 받은 자에게도 그러한 수칙을 준수할 주의의무가 신의칙상 인정된다고 볼 경우, 고의·과실에 따른 주의의무 위반 행위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추가 비용 지출 등 손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음

IV

손해배상청구 절차

11 개요

○ 비용부담주체가 보건복지부장관 등 국가기관인 경우에는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국가소송,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



② 관할 법원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의 관할 법원
 -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민사소송법 제2조)
 - 의무이행지 또는 거소지 관할 법원(민사소송법 제8조)
 - 불법행위지 관할 법원(민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③ **절차**

- 국가소송
 - 관할 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개별 국가기관이 소송 수행
 - 예> 국가기관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출한 비용 일체의 손해배상소송의
 관할 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인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서울고등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손해배상소송 진행

- 만약 소송물 가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검찰청의 지휘 외에도 소의 제기, 대리인 선임, 상소 등 주요 소송행위 시 관할 검찰청의 지휘 외에 법무부장관의 승인도 얻어야 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민사소송
 - 국가소송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어 검찰청의 지휘 없이 독자적으로 관할 법원에 소 제기 등 소송 수행

V

코로나19 구상권 협의체

① 주요 내용

- 법무부는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위반, 방역방해 등 감염확산 행위에 대한 구상권* 행사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등의 소권 행사에 있어 적정성과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 * 구상금 및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절차를 언론보도 상 통용되는 '구상권'으로 통칭
- **소권의 통일적 행사 -** 일관된 제소 기준 마련
 - 구상권소송 제기 권한은 방역비용 등 부담 주체인 소관행정청, 각 지방자치단체에 분산되어 있어, 공동 대응 필요
 - 전국의 위법행위사례를 공동으로 검토하여 제소기준을 마련하고, 개별 소송 사이의 형평성 도모 및 누락사례 방지
- **적정한 소권 행사** 분산된 증거·자료 등 취합 및 공유
 - 소송수행 상 주장·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 등*이 여러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적정한 소송 수행을 위해서는 관련기관 간 협조 필요
 - * 예> 역학조사 결과,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등

- 협의체 구성을 통하여 관련기관 간 소송수행에 필요한 증거·자료 등을 적법한 범위 내에서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② 추진 현황

- '20. 9. 29.(화) 협의체 구성
 - 협의체 참여기관 : 법무부, 보건복지부(중앙사고수습본부), 질병 관리청(중앙방역대책본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강원도, 경상남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부법무공단
 - ※ 정부법무공단은 서울특별시가 제기한 2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신천지, 시랑제일교회)의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있음
- '20. 10. 14.(수) 협의체 1차 회의 개최
- '20. 12. 24.(수) 협의체 2차 회의 개최

③ 향후 계획

- 향후 월 1회 정기적인 협의체 운영을 통해 소제기 기준 마련 및 적 정한 소송 진행을 위한 논의 예정
- 한편, 코로나19 구상권 협의체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소를 제기하였거나 제기 여부를 검토 중인 지자체 등 기관의 폭 넓은 참여가 반드시 필요함

VI

정부법무공단의 법률 지원

- 국가소송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사소송 모두 정부법무공단의 사건 수임 등 법률지원 가능(정부법무공단법 제16조 제1항 제1호)
 - ※ 대리인 선임료 등 소송비용은 수행청(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부담
- 소송수행청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별적으로 정부법무공단과 접촉하여 선임계약의뢰 절차 진행
 - ※ 다만, 수도권 이외 지역 관할 법원 사건의 경우는 정부법무공단의 사건 수임을 위해 법무부장관의 승인 필요

VII

문의처

- 법무부 소송지원 담당자 : 국가송무과 윤경식 사무관(02-2110-3205)
- 정부법무공단 담당자 : 기획홍보실 박종혁 변호사(02-2182-0015)